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시정요구 처리결과보고 점검〉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06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향엽 · 이주희 · 문진석 · 박용갑 · 염태영 · 이기현
장종태 · 김 윤 · 채현일 · 박지원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6. 5. 18.

3. 회 부 일 : 2026. 5. 19.

※ 의안번호 : 1900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

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5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대한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4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보고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다.</u>
<u>⑤·⑥</u> (생략)	<u>⑥·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국조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경과·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를 처리함.

국회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¹⁾

이와 별도로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후속 조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은 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주체는 국회임.²⁾³⁾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절차에는 국회의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정부 또는

1) **국감국조법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③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대한민국헌법」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주체는 국회이나, 효율적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실시기관이 됨.

해당 기관의 국회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국회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국감국조법은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의 주체와 처리결과보고의 대상을 국회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안 제16조제5항 본문)은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실제 관여하지 아니한 국회입법조사처⁴⁾로 하여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절차 중 하나인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이 경우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에 부여된 권한인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을 행사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절차에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유사한 절차가 중복·충돌될 소지도 있어 보므로, 그 수행 주체의 적법성·적절성 및 절차의 중복성 측면에서 개정안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의사정리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로 하여금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를 별도로 명시⁵⁾한다면 국회입법조사처의 수행 주체로서의 적법성을 확보할

4)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임.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 직원은 사무보조자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보조할 수 있음.

5) 국감국조법 제16조제3항은 소관 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등으로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위원회를 지정하여 조치를 대신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감국조법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⑥ 국회는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수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아울러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국감국조법상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를 국회가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요구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를 하지 못한 상태로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사항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개정안(안 제16조제5항 단서)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후속조치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그 후속조치를 국회입법조사처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가 처리되지 아니한 이상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현행 국감국조법상 시정요구사항을 처리할 의무가 없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주요 실시내용에 대하여 후속조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후속조치도 존재하지 아니함. 즉, 존재하지 아니하는 후속조치를 국회입법조사처가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후속조치 점검의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경험과 역량에 기반⁶⁾하여 국정감사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제도 도입 시 업무 부담 증가가

6)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예상되므로 직제 개정을 통한 충분한 분석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17
